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05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67207 추심금

원고(선정당사자) A

피 고 1.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 [redacted]시 [redacted]구

변 론 종 결 2019. 1. 9.

판 결 선 고 2019. 1. 23.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2015. 10. 7.[1)]

가. C에 대하여 한 취득세 148,000,000원[2)], 농어촌특별세 7,400,000원, 지방교육세

1)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2015. 10. 7. C 및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각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특정하고 있으나, 피고[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C과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2015. 10. 7.'은 C과 원고(선정당사자)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각 신고납부한 '2015. 1. 30.'의 오기로 보인다.

2)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C은 취득세로 147,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는 '147,0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05

14,8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나. 원고[3]에 대하여 한 등록면허세 900,000원 및 5,757,700원, 교육세 180,000원 및 1,151,5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70,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일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및 선정자 B(이하 통칭할 경우 '원고 등'이라고만 한다)에게 7,989,2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 매매 및 등기 경위 등

1) C은 2014. 12. 18. D(개명 전 이름: E)과 사이에, C이 [redacted]시 [redacted]구 F, G, H, I 등 4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대금 3,7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은 위 매수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5. 1. 30. 원고 등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3) 원고(선정당사자)는 '원고'라고 특정하였으나,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이 등록면허세 등을 각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원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의 오기로 보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05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각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3) C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5. 1.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는 원고 등, 채권최고액은 450,000,000원, 채무자는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자를 원고 등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라고 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와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 납부

1) C은 2015. 1. 30.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3,7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47,000,000원, 지방교육세 14,600,000원, 농어촌특별세 7,400,0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 등은 2015. 1. 30.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치면서,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에게 등록면허세 900,000원 및 5,757,700원, 지방교육세 180,000원 및 1,151,500원을 각 신고납부[이하 위 1)항 및 2)항의 각 신고납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신고납부'라고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 경위

1)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D은 2015. 2. 16. C과 원고 등을 상대로 [redacted] 북부지방법원 2015가합902호로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4. 7. 'E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D과 같은 이름으로 개명한 후, 위조된 주민등록 초본을 이용하여 마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05

면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C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 등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바, 이 사건 각 등기는 위조된 관련서류에 근거하여 부적법하게 마쳐진 것이어서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D에게, C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원고 등은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5. 3.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이 사건 각 등기는 2016. 6. 8. 위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모두 말소되었다.

라. 원고 등의 대여금청구 소송 등

1) 원고 등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말소되자, 2017. 2. 20.경 C 등을 상대로 [redacted]지방법원 2017가합50850호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 19. 'C은 원고 등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 등과 C 사이에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8. 4. 24. [redacted]지방법원 [redacted]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됨에 따라 발생한 C의 용인시에 대한 지방세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용인시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8타채1002) 결정을 받았다.

3) 원고는 위 추심명령에 터 잡아 2018. 4. 30.경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에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는 2018. 5. 31. 원고에게 '납세의무자인 C의 신청에 의해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05

요청하는 청구서와 환급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신고납부[4]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임이 확정되어 이미 말소되었으므로, C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취득세 등의 각 신고납부는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로서, 위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을 대위하여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을 상대로 C이 각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각 취소를 구하고, 원인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하여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 등이 각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 등도 각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각 신고납부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신고납세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바,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와는 달리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라고

4) 원고는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의 C 및 원고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신고납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05

할 수 없다.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C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취득세 등을 각 신고납부하였고, 원고 등은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치면서 등록면허세 등을 각 신고납부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신고납부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C 및 원고 등에게 어떠한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C 및 원고 등이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라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에게 취득세 등 및 등록면허세 등에 대한 각 경정청구를 하고,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해당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 원고 등의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에 대한 이 사건 각 신고납부의 취소 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다만,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만 가지고 있는 자는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대여금 채권자로서, 납세의무자인 C을 대위하여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고,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7183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각 금원 지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임이 확정되어 이미 각 말소되었으므로, 피고 용인시 처인구는 C이 각 신고납부한 취득세 148,000,000원, 농어촌특별세 7,400,000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05

지방교육세 14,800,000원의 합계 170,200,000원(= 148,000,000원 + 7,400,000원 + 14,800,000원)을 C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이자 C의 지방세 반환채권에 관한 추심금 채권자로서, C을 대위하거나 추심금 채권자의 지위에서 위 170,200,00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는 원고에게 170,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는 원고 등에게 원고 등이 각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 900,000원 및 5,757,700원, 지방교육세 180,000원 및 1,151,500원의 합계 7,989,200원(= 900,000원 + 5,757,700원 + 180,000원 + 1,151,5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각 금원 지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인 구(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 용인시 처인구는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redacted]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이므로, 자치구가 아니라 [redacted]시의 하위기관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는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등의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에 대한 이 사건 각 금원 지급청구 부분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는 소로서 부적법하다[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C의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각 신고납부 및 원고 등의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의 각 신고납부가 당연 무효임을 이유로, 위 취득세 등에 상당하는 각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본세와 부대세의 귀속주체가 다른 경우, 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05

당이득반환청구는 본세와 부대세의 각 귀속주체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인데,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취득세(1호의 가.목), 등록면허세(1호의 나.목), 지방교육세(2호의 나.목)는 각 도세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경기도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농어촌특별세법 제10조에 의하면, 시장·군수가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때에는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승철

판사 인진섭

판사 권순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05

별지1

선정자목록

1. A

2. B.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05

별지2

관련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군)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레저세

다. 담배소비세

라. 지방소비세

마. 주민세

바. 지방소득세

사. 자동차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다. 레저세

라. 지방소비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

④ 시·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05

1. 담배소비세
2. 주민세
3. 지방소득세
4. 재산세
5. 자동차세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05

④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18,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를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해당 특별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③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④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05

■ 농어촌특별세법

제10조(국고납입)

시장·군수가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끝.